

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의 견 서

(김재진 의원)

-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입니다.
-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60호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그동안 개정된 동 조례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항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조례의 명확성을 보장함으로써 적용과정에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또한 일부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.